해외 물품매매계약서

[매수인명](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매도인명](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간 물품 매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과 "갑"은 아래 제2조에서 정한 계약 제품에 대하여 "을"이 보유한 판매망과 마케팅 등을 통하여 물품을 직접 판매 유통하고 마케팅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용한다.

제2조 [계약 물품]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물품의 종류가 많을 시에는 계약서 하단부 [별첨]란을 두고, 날인 혹은 간인하여 함께 첨부한다. (+ 최소 발주 수량이 있는 경우 MOQ 수량 칸을 추가한다.)

순번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비고
				(VAT별도)	
1					
2					
3					
합계					

제3조 [계약 지역 및 판매 채널]

본 계약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계약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판매 채널을 추가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서 후면에 각인하여 첨부한다.

- 1. 계약 지역: 미국
- 2. 판매 채널: walmart, Amazon, etc.

제3조 [물품 주문, 공급, 인도]

- ① 매수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 수량, 단가, 납기를 발주서에 명시하여 "갑"에게 메일 또는 수신 가능한 매체로 교부해야 한다. "매수인"의 발주요청에 대하여 "매도인"이 수락을 거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이 발주를 접수한 날로부터 <u>3영업일</u>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기간 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발주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수락하여 준비한 재고에 대하여 취소할 수 없으며, 발주된 제품에 대하여 소진할 책임이 있다.
- ③ 납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되 "매수인"의 완제품 구매 발주서에 명시된 날을 원칙으로 하며, "납기일"이란 제품 인도 조건에 따른 제품 인도일을 납기일로 한다.
- ④ 제품 인도 조건은 FOB조건으로 한다. (+INCOTERMS 인도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작성)
- ⑤ "매도인"은 계약기간 내 생산 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수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 ① "매도인"은 매월 마감 후 인보이스를 익월 10일 전까지 "매수인"이 지정한 이메일로 세금계산서(수출의 경우 영세율계산서)를 발송하며, "매수인"은 인보이스를 확인 후 확정한다. "매수인"은 영세율계산서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매도인"에게 발송한다.
- ② "매수인"은 제품 발주 시 물품 대금을 100%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물량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상응하는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체로 발주 시선금 50%, 출하 시 잔금 50% 혹은 선금 50%, B/L 발행 후 50% 조건으로 협의한다. 대금 지금 방식은 양사간 협의하여 작성하면 된다.)
-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 받은 날부터 거래관 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 1. 납품 받은 물품이 계약한 물품과 다른 경우
 - 2.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된 경우
 - 3.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⑤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 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조 [품질검사]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 전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계약 체결시에 미리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 1. 매도인이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2.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 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 는 경우
- ③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등]

- 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매수인의 검수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 ③ 매도인은 검수 결과 물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반품 및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환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등]

-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제품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영업비밀은 품질기준, 가격, 최종 입고처(사업장) 정보, 협력업체 정보, 구매전략과 관련된 각종 인쇄물과 회의록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해제로 인한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 본 조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③ 비밀유지의무의 기간은 "거래가 종료된 이후 ___년간" 유지한다.

제9조 [의무 사항]

"매수인"은 목적물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매수인"은 목적물 판매에 필요한 모든 광고 사항(TV,라디오, 잡지 와 포스터 광고 포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기획 판촉물(포스터,등신대,포토카드 등)및 프로모션에 소요되는 비용(특별 세일과 프로모션 비용이 요구되는 교역 포함)및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및 기간]

-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계약 기간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20 년 00월 00일로부터 20 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 ②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 ① 매수인 또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거나,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에 의한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3.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공공기관의 지급금지 요청 또는 강제집 행의 통보를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4.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매도인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 이 종료되어 해당 물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수 있다.
- ③ 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 변경 등]

①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내용은 매수인과 매

도인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또는 수정은 매수인과 매도 인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내용은

[별첨]란에 첨부하여 기존 계약과 함께 날인하여 첨부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물품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1일당 지연 물품

해당액(합계)의 %를 지연 배상금으로 총 발주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

기도 합니다. (단, 매수인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분

쟁의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5조 [기타]

②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 약정

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0000년 00월 00일

매수인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인)

매도인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인)